

의안번호	2125707
의 퇴 인	유의동의원
회 답 일	2023.12.26.
추계번호	23D4922
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7(전략산업지원기금의 설치) 및 안 제29조의8 신설(전략산업지원기금의 재원)	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(이하 “전략산업기업”이라 함) ¹⁾ 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(이하 “전략산업지원기금”이라 함)을 설치하고,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, 정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며, 정부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9조의7(전략산업지원기금의 설치) 및 안 제29조의8 신설(전략산업지원기금의 재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안 제29조의7(전략산업지원기금의 설치)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(이하 “**전략산업기업**”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한다.

1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업종

2. 상세 사유

- 정부 차입금 등으로 전략산업지원기금 설치(안 제29조의7 및 안 제29조의8 신설)
 - 개정안에 따라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전략산업지원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고, 정부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구체적인 운영규모, 지원대상, 지원조건, 지원방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, 현 단계에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산업지원기금 지원사업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
 -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[표 1]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금 현황: 2019~2023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정부출자금	5,550	21,026	11,208	7,000	3,400

자료: 금융위원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오명희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